



경 찰 청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수료 독려 요청

1. 관련 근거

- 가. 도로교통법 제73조제4항(교통안전교육)
- 나.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8조제4항 「별표 6」 (과태료의 부과기준)
- 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46조의2(긴급자동차 운전자에 대한 교통안전교육)

2 위와 관련, 공무원도 긴급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므로, 온라인 교육을 이수하셔야 합니다.

※ 긴급자동차 운영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경우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에서 온라인 교육(교과명 : 긴급자동차 운전자교육)을 수강하면 교육이수 처리됨

3. '19. 4. 25.부터 긴급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 안전운전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8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경찰청에서는 교육과 관련된 계도·홍보 기간을 '19. 4. 25.~'19. 7. 24.까지 3개월간 운영하였습니다.

4. '19. 7. 25. 부터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니, 관련 기관 및 시설에서는 '19. 7. 24. 까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독려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18년 이후 교육을 1회라도 수강하신 분은 교육 수강하지 않으셔도 되며 '18년 수강자는 21년, 19년 수강자는 '22년에 정기교육을 이수하시면 됩니다.(매 3년 교육이수)

붙임 1.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제14911호, 2017. 10. 24 공포, 2018. 4. 25 시행).

2. 도로교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안).

3.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안). 끝.

경 찰 청 장



수신자 대통령경호처장, 국가정보원장, 국무조정실장(규제 총괄정책관), 국무조정실장(법무감사담당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규제개혁법무담당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통신정책기획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전파정책기획과장), 중앙전파관리소장, 우정사업본부장, 교육부장관, 국방부장관, 국방부장관(규제개혁법제담당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법무부장관, 법무부장관(검찰과장), 법무부장관(교정기획과장), 기획재정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국세청장,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관세청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환경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검찰총장, 검찰총장(정책기획과장),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도로정책과장), 국토교통부장관(도로운영과장), 해양수산부장관, 병무청장,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산림청장, 조달청장, 기상청장, 통계청장, 농촌진흥청장, 방위사업청장, 문화재청장,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소방청장, 해양경찰청장, 대구광역시, 인천광역시, 광주광역시, 강원도지사, 대전광역시, 충청북도지사, 울산광역시, 충청남도지사, 경기도지사, 전라북도지사, 전라남도지사, 경상북도지사, 경상남도지사,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세종특별자치시장



경감	장영준	경정	최대근	교통기획과장	전결 2019. 7. 5. 황창선
협조자					
시행	교통기획과-4262	(2019. 7. 5.)	접수	장비기획과-668	(2019. 7. 8.)
우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미근동, 경찰청)	/ http://www.police.go.kr		
전화번호	02-3150-0607	팩스번호	02-3150-3851	/ kuakjung@police.go.kr	/ 비공개(5)